

의안번호	2202511
의 퇴 인	성일종의원
회 답 일	2024.10. 23.
추 계 번호	24D2622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(복무의 구분)	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(현행 단기복무 장교)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도록 규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(복무의 구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육군3사관학교¹⁾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)
-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단기복무 장교로서 의무복무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²⁾, 개정안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

1)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 3·4학년 편입생 과정으로, 통상 졸업까지 2년이 소요됨

2) 「군인사법」

제6조(복무의 구분)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.

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
2. 「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
3.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
4.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

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
- 2.~4. (생략)

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(銓衡)을 거쳐야 한다.

기복무 장교로 임용함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, 급식비 및 피복비 등 관련 제반경비(이하 “인건비등”이라 함)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단기복무에서 장기복무로 전환 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, 국방부 의견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로 전환할 경우 전체 장기복무자 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 등 그 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 - 국방부에 따르면,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을 장기복무로 전환 시에는 장기복무자 비율조정, 임관구분별 획득인원, 양성교육체계 등 다양한 정책이 연쇄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재정소요 산출이 제한된다는 입장임
- 참고로, 2019~2023년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 및 졸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육군3사관 학교 입학자 및 졸업자 현황: 2019~2023년

(단위: 명)

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입학자	2,551	529	523	523	532	444
졸업자	2,422	489	496	483	477	477

자료: 국방부

⑤~⑧ (생략)

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)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시·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. 다만,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(轉役)을 지원할 수 있다.
- 2.~3.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4.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. **다만,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,** 「병역법」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, 여군(女軍) 중 간호과 장교(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)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5.~7.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②~⑥ (생략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